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. ~ 2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단서 중 “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 제2항에 따라”를 “필요한 경우에는”으로, “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”를 “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의 관할구역란 중 “전라북도”를 “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별표 2의2를 삭제한다.

대통령령 제3149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4년 2월 29일”을 “2026년 2월 28일”로 하고, 같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3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「 <u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</u> 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<u>다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.</u>		제13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		
② ~ ④ (생략)	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대통령령 제3149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		대통령령 제3149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		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 <u>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</u> 」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<u>2024</u>	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</u>		

<u>년 2월 29일까지</u> 존속한다. ② (생 략) <u>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</u> <u>원의 존속기한) 이 영 시행으로</u> <u>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</u> <u>(운전서기보 1명)은 2024년 2월</u> <u>29일까지</u> 존속한다.	<u>년 2월 28일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28